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0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1월 3일

제1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-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무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
-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
-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

다. 주요내용

-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(안 제5조제3항 신설)
 - 지방공무원법 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

라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 일부개정안 통보
[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-864('08.9.9)호 및 경상북도 자치행정과-11829('08.9.11)호]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과 중 현

○ 본 조례안은

-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을 해소하고 또한 공무원이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안 제5조제1항중 “친절·공정”을 “친절”로 자구 변경
-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“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” 명시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종교편향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